



# 연세대학교 커리어연세 현장실습 주요 확인 사항

실습기관용



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 
현장실습지원센터

# 연세대학교 커리어연세 현장실습 주요 확인 사항(실습기관용)

## [ 2024학년도 2학기 ]

### 1. 개요

#### 가. 커리어연세 현장실습이란?

연세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, 대학과 기업·기관(이하 실습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,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이자 교과목(과목명: 커리어연세 현장실습)

나. 실습 기간: 2024. 9. 2.(월)~12. 20.(금)

다. 실습기관 모집 기간: 2024. 6. 10.(월)~7. 5.(금)

라. 학생 지원 기간

1차  
2024. 7. 8.(월)~7. 19.(금)

추가모집  
2024. 7. 22.(월)~8. 7.(수)

※1차 지원 기간 이후, <접수 마감>을 원하는 실습기관은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마. 인정 학점

운영학기	실습기간	인정학점	실습시간
정규학기	70일 이상(560시간)	15학점	1일 8시간 / 주 40시간 기준

※ 공휴일 및 유급휴가(3일)은 포함하지 않은 기간임.

### 2. 2024학년도 2학기 커리어연세 현장실습 운영 내용

#### 가. <표준 현장실습학기제> 기준으로 운영

-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산학협력법」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 적용
- 직무 관련 교육을 10~25% 비율로 진행해야 하며,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의 75% 이상 지급 필수
-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반드시 직접 정한 비율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

#### 나. 운영 일정 및 절차

1 단계	 <b>실습기관 참여 신청</b> <div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10px; padding: 2px 10px;">2024. 6. 10.(월)~7. 5.(금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실습지원 시스템(intern.yonsei.ac.kr) 접속</li> <li>- 홈페이지 가입: [기업 회원 가입하기]</li> <li>- 해당 학기 참여신청서 작성: 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4학년도 2학기 커리어연세 현장실습 → 신규 등록</li> </ul>
	 <b>유의 사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 시 직인 등록 필수 (온라인 3자 협약 시 필요)</li> <li>- 가입 승인까지 약 24시간 소요</li> <li>- 참여신청서가 <b>작성 가이드(7페이지 참고)</b>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, 해당 정보는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음</li> <li>- 실습기관 내 여러 부서가 동시 참여할 경우, 부서별 개별 신청서 등록 필요</li> </ul>
2 단계	 <b>실습생 선발 절차 진행</b> <div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10px; padding: 2px 10px;">2024. 7. 8.(월)~8. 7.(수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서류 접수: 현장실습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확인</li> </ul>



- 2) 면접 평가: 학생의 면접 경험을 위하여 면접 진행 권장
- 3) 평가 후, **현장실습지원 시스템 내 심사 결과 입력**
  - 합격 학생: <선발대기>
  - 불합격 학생: <탈락>

#### 유의 사항

- 학생 1인당 3개의 실습기관에 지원 가능
- 반드시 기한 내에 현장실습지원 시스템 내에 심사 결과 입력
- **<선발대기> 처리한 학생이 다중합격 하였다면, 최종적으로 타 실습기관 선택 가능**
- 위와 같은 사유로 실습기관에서 선발한 학생이 최종 실습생이 아닐 수 있음

### 3 단계

#### 다중지원 과정에서의 최종 실습생 선발

2024. 8. 12.(월)

- 1) 실습기관에서 <선발대기> 처리한 학생이 실습 원하는 기관을 시스템 내에 1차 입력  
→ 현장실습지원센터로만 통보됨
- 2)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<선발대기> 되어 원하는 기관을 확인한 학생에 대해서 **학적 조회 진행 후, 최종 선발생 확정**

#### 유의 사항

- 통보 내용은 현장실습지원 시스템 내 “지원자 선정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4페이지의 <다중지원 및 선발 처리 과정 안내>를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 단계

#### 온라인 3자 협약 체결

2024. 8. 19.(월)~8. 22.(목)

- 체결 방법: 현장실습지원 시스템 로그인 → 지원자 선정 → 협약전 클릭 → 협약 동의

### 5 단계

#### 실습 진행

2024. 9. 2.(월)~12. 20.(금)

- 1) 산재보험 가입: 실습 시작 후 **일주일 내** 산재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재 필수
  - 등재 방법 : 현장실습지원 시스템 > 출근부 및 평가표 > 산재보험 서류 클릭 > 등재
- 2) 산재보험 외 4대 보험 미가입
- 3) 출근부 작성
- 4) 실습지원비 보전(환급) 희망 실습기관 신청
- 5) 현장실습지원센터(학교)에서 실습 기간 중 **2회 방문지도** 진행

#### 유의 사항

- 실습지원비 보전: 학교 기준 금액(최저임금 100%) 이상 지급 확인 시, 학교 기준 금액의 25% 환급 (**[붙임 1]** 참고)

### 6 단계

#### 실습 종료

2024. 12. 20.(금)

- 기관 평가표 작성
- 출근부 작성 마무리

- 실습지원비 지급 마무리

**유의 사항**

- 실습지원비는 주별 또는 월별 지급

**다중지원 및 선발 처리 과정 안내**

진행 상태	접수마감 / 선발개시					
선발 처리 과정	<b>학생</b> 이력서 제출 ※ 최대 3개의 실습기관으로 다중지원 가능	<b>실습기관</b> ① 심사 ② 시스템 내 결과 입력 →선발대기/탈락	<b>센터</b> 학생에게 <선발 확정 입력> 진행 안내	<b>학생</b> <선발 확정> 입력 ※ 학생 입력 내용은 센터만 확인 가능합니다.	<b>센터</b> ① 학적부 확인 후 적격 심사 ② 실습기관에 <선발/포기> 안내	<b>실습기관</b> 시스템 내 최종 선발생 확인
선발 과정 유의 사항	- 학생은 3개의 기관까지 다중지원 가능하므로 <다중합격>인 경우, 최종 결정한 실습기관을 시스템 내 입력합니다. - 다중합격생의 실습기관 선택 내용은 1차로 센터에만 통보됩니다. - 센터에 통보한 학생 의사 결정 내용은 학생 학적부 확인 후 적격 시, 최종적으로 실습기관으로 시스템을 통해 안내됩니다. * 학생의 학적상태에 따른 다중합격 시, 실습기관에 최종적으로 안내되는 내용					
	조건	학적 상태	적격		부적격	
		합격 상태	1개 합격	2개 이상 합격		합격
	최종결과	<선발>	- 학생이 선택한 기관: <선발> -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기관: <포기>		<탈락>	
	- 따라서 실습기관에서 최초로 <선발대기>로 선발 처리한 학생은 <최종 선발생이 아님>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					



### 3. 실습지원비

#### 가. 실습지원비란?

-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
- 현장실습은 근로계약에 의거한 근로제공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, 실습지원비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으로 인정됨.

#### 나. 실습지원비 의무 사항

-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(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제1항)
- 의무 지급액: 최저임금의 75% 이상
-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의 75~100% 이상 지급  
ex) 교육시간 비율이 10%인 경우, 최저임금의 90% 이상 지급
- **실습지원비는 비과세로 지급하여야 함**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 3. 9.)
  -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.
  - 즉,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.  
※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 추가 질의는 국세청(126)-2번-4번으로 문의

#### 다. 실습지원비 산정 및 지급: [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)]에 따름

지급처	지급 금액	내용
실습기관 (기업→학생)	2024학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 실습시간 중 교육시간 비율 반영하여 실습지원비 산정 및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 시간 비율은 10~25% 범위 필수 편성</li> <li>-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는 75~100% 이상 지급</li> </ul> </li> <li>○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일은 주급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</li> <li>○ 실습지원비는 비과세로 지급</li> </ul>
	<b>(선택)</b> 100% 지급 시: 월 2,060,740원 (일할 94,656원) <b>(의무)</b> 75% 지급 시: 월 1,545,555원 (일할 70,992원)	

#### [ 실습지원비 산정식 ]

조건	① 주휴수당 포함: 주 48시간으로 산정 ②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일은 주급(최저임금의 100%) 기준 일할계산 - 2024년 주급 실습지원비: 473,280원 ③ 최저임금 - 2024년 최저임금: 9,860원 ④ 실습기간: 2024. 9. 2.(월)~12. 20.(금) / 16주
산출	<b>[ 100% 지급 ] (선택)</b> 16주에 대한 실습지원비 $= 9,860\text{원} \times 48\text{시간} \times 16\text{시간} = 7,572,480\text{원}$
	<b>[ 75% 지급 ] (의무)</b> 100% 금액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 $= 7,572,480\text{원} \times 0.75 = 5,679,360\text{원}$

※ [붙임 1] 참고

## 라.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제도 및 절차

-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제도 : 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교육시간에 따른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%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, 실습생 1명 당 '최저임금액 25%' (고정)의 금액을 실습기관에 환급하는 제도

지급처	지급 금액	절차
현장실습 지원센터 (대학 → 실습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 기준 금액 이상 지급 시 기준 금액의 25% 환급</li> <li>- 학교 기준 금액: 7,572,480원</li> <li>- 환급 금액: 1,893,12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리 환급 신청 진행 (*신청 시기 별도 공지)</li> <li>- 실습 종료 후, 실습생 급여 통장에 이체된 금액 확인 후 환급 진행</li> </ul>

※ [붙임 1] 참고

## 4. 커리어연세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유의사항

### 가. 의무 사항

<b>실습 운영 관련 의무 사항</b>	<p><b>[ 실습 및 교육 진행 관련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규 실습시간: 전일제 기반으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진행 불가능한 예) 당일 10시간 근무→익일 6시간 근무 / 1주 40시간 이상 근무→차주 40시간 미만 근무</li> <li>* 시차 출퇴근제는 가능하나, 퇴근 시각이 22시 이후의 시각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</li> </ul> </li> <li>- 재택실습 불가(국가 재난 상황 시 예외적으로 가능)</li> <li>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10~25% 범위에서 운영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습기관 내 교육 및 실습 담당자 배정</li> </ul> </li> <li>-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</li> <li>- 실습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불가</li> <li>-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출석부 등록, 평가서 작성</li> </ul>
	<p><b>[ 산재보험 가입 관련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증명서 현장실습지원 시스템 내 등록(일 주일 이내)</li> </ul>
	<p><b>[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의무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직접 지급</li> <li>*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</li> </ul> </li> <li>-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의 75~100% 이상 지급</li> <li>- 실습지원비는 비과세로 지급</li> </ul>
	<p><b>[ 실습생 보호 조치 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연장 실습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습 원칙: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1주 최대 5시간 한도까지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주 40시간 초과 연장실습인 경우, 최저임금 100% 기준으로 산정</li> </ul> </li> <li>2) 야간 실습(22:00~익일 06:00) 진행 불가</li> <li>3) 현장실습 수행 중 실습생이 어려움을 느낄 경우, 지도교수의 면담 후 조치</li> </ol>
	<p><b>[ 실습생 휴일 보장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급휴일: 1개월 만근 기준 1일의 휴일 보장하며, 금전 지급 등으로 대체 불가</li> <li>- 공휴일 보장</li> <li>-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휴일: <b>총 8일의 휴무</b> = 유급휴일(3일) + 공휴일(9. 16.(월)~9. 18.(수), 10. 3.(목), 10. 9.(수) / 5일)</li> </ul>



\* 위의 휴일은 출근부 기재 시, <휴일>로 입력함

-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함 (증빙서류 제출 필요)
  - ①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
  - ② 질병,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
  - ③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, 사망 등의 경조사일

## 나. 유의 사항

###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 불가능 실습기관

- 1)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)
- 2)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실습기관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)
- 3)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실습기관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실습기관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)
- 4) 기타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실습기관 및 직종
  - 직계존속 경영 실습기관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(외근 영업직 제외하고는 가능) 등
  - 소비·향락 업종, 해당 사업장에서 실습이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 업체 등
  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  - 노사분규,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습기관
  - 경비, 건물관리, 청소 용역, 홀 서빙 등 단순 노무 직종
  - 야간(22:00~06:00) 근무 직종

### 현장실습 학기제 불인정 기준

#### [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발췌]

- 1)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- 2)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 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  - \* 학교-실습기관-학생 간의 3자 협약 및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. (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4조, 제14조)
  - \* 3자 협약 및 수강신청 완료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며,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함.
- 3)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- 4)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5)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
- 6) 그 밖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,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

### 참여 신청서 작성 가이드

- 1) 실습 형태: 표준
- 2) 교육 담당자와 행정 담당자가 다른 경우 각각 기재
- 3) 교육 시간 비율: 10~25% 범위 필수 편성
- 4) 정규 실습 시간: 전일제 기반으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
- 5) 근로계약 체결 여부: 체결하지 않음
  -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 3자 협약에 근거해 현장실습 수행
- 6) 실습지원비: 최저임금 75~100% 이상의 금액 기재
  - 100% 이상 지급도 가능
- 7)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 여부: “가입하지 않는다” 선택
  -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지원비는 비과세이며, 산재보험 가입만이 의무

# 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[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안내 ]

## 1. 현장실습지원비란?

가. 현장실습지원비(이하, 실습지원비)는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.

-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도 가능합니다. 단,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안내문에서는 최저임금액으로 기준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.

## 나. 실습지원비의 산정

### 1) 전체 실습시간 중 교육시간 비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.

- 교육시간 비율: 전체 실습시간의 10%~25% 범위에서 설정(의무 사항)
- 실습지원비 산정식(시간당): '최저임금액' x '100%-교육시간 비율'  
예) 교육시간 비율 25%인 경우: '2024년 최저임금액 9,860원' x '75%'
- 교육시간 증빙은 실습생 보고서로 대체합니다.
- 일할계산 방법: 실습 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.  
(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제 22조 제4항제3호 발취)
- 규정상 주 단위 실습지원비 계산 시에는 주 실습일수를 곱하도록 되어있으며, 주 실습일수는 5일로 산정합니다.
  - 일할 계산식: < 주 단위 실습지원비 > / 5일 x 잔여일 수
  - 주 단위 실습지원비(473,280원)의 일할계산액인 94,656원에 잔여일을 곱하여 산정

### 2) 실습지원비 최소 지급액: 최저임금의 75%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.

- 예) 75% 지급일 경우, 2024년 2학기 총 지급액  
= 16주에 대한 금액  
= [9,860원 x 주 48시간 x 16주] x 0.75  
= **5,679,360원(주휴수당 포함)**

### 3) 연장실습의 실습지원비

- 주 40시간 초과 연장실습인 경우, 최저임금 100% 기준으로 산정
- 지급액 산정식: 최저임금액 x 1.5(50% 가산) x 실습시간
- 연장실습은 지양해 주시고, 부득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습생의 동의 하에 가능
  - 1주 최대 5시간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.

다. 지급 방식: 월/주 기준으로 당월/익월 정기 지급해야 합니다.

라. 참여 신청서에 실습생에게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고, 해당 금액은 실습 중 누락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 (학교에서 제시한 비과세 금액을 실습생 통장으로 지급)

마. 실습지원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하며,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떼지 않아야 합니다.



- 첨부 교육부 공문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(2022. 2. 7.)  
참조 (문의: 국세청(126)-2번-4번)

## 2. [선택사항]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기준

가.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제도는 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교육시간에 따른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%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, 실습생 1명 당 '최저임금액 25%(고정)'의 금액을 실습기관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
- 본 제도는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을 근거로 하여, 국고 재원으로 운영됩니다.
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30조(지도감독) 5항 3호, 4호 참조

### [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처리 프로세스 ]

① 실습기관 → 학생에게 최저임금액 100% 이상 지급

- 2024. 9. 2.(월)~12. 20.(금), 총 16주  
= 16주에 대한 금액 = 9,860원 x 주 48시간 x 16주  
= **7,572,480원**

\* 연장실습비는 포함하지 않음

☞ 위와 같이 실습기관이 **교육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100% 이상** 지급한 경우

② 학교 → 실습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% 환급(대학혁신사업비 재원)

- 실습생 1명 당 총 7,572,480원을 지급한 실습기관에 1,893,120원(25%) 환급
- 학생 통장 입금액이 총 7,572,480원 이상임을 확인 후 환급 처리

예) 2명의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 시, 환급액 계산 : 1,893,120원 x 2명 = 3,786,240원

나. 실습지원비 보전 지급 신청: 실습생 선발 후, 학교의 추후 안내(메일)에 따라 신청

- 기한 내 요청 자료를 제출한 실습기관에만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으니,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(지도감독) 5항 3호, 4호 참조

## ※ 기타: 교육부 중요 지침 사항

가. 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며,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
나. 「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」(학교-학생-실습기관, 3자 협약) 작성 · 체결이 기본 요건입니다.

해당 협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.



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 
현장실습지원센터

문의사항 02)2123-6616~7  
메일 ysjob7@yonsei.ac.kr  
홈페이지 intern.yonsei.ac.kr  
YOUTUBE <https://www.youtube.com/@intern.yonsei>

